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
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에 400만 미합중국 달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출연에 3,800만 미합중국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1,700만 미합중국달러 등을 신규로 출연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사항 외에는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2. 3. 21. ~ 4.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출연	400만 미합중국달러
----	-----------------------------	-------------

별표 2에 제93호부터 9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3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출연	3,800만 미합중국달러
94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 출연	500만 미합중국달러
95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출연	1,200만 미합중국달러
96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212만 미합중국달러
97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출연	375만 미합중국달러

별표 4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 출연	300만 미합중국달러
----	----------------------	-------------

별표 5에 제31호 및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출연	1,700만 미합중국달러
32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출연	238억4,900만원

별표 7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출연	900만 미합중국달러
----	--------------------------------	-------------

별표 10에 제35호부터 제3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36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 기금에 출연	100만 미합중국달러
37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출연	140만 미합중국달러

별표 12에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 출연	430만 미합중국달러
21	미주개발은행의 빈곤감축신탁기금에 출연	400만 미합중국달러
22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출연	400만 미합중국달러

별표 16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의 출연	80만 미합중국 달러
---	--	-------------

별표 17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 출연	119억원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연 락 처	(044) 215 - 8725